

중앙선거관위,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2024년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.

《 2024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》

(단위 : 원)

합 계 (299석)	더불어민주당 (170석)	국민의힘 (108석)	조국혁신당 (12석)	개혁신당 (3석)
12,630,873,130	5,668,993,730	5,199,677,320	1,073,263,260	337,826,320
100%	44.88%	41.17%	8.50%	2.67%
	진보당 (3석)	기본소득당 (1석)	사회민주당 (1석)	새로운미래 (1석)
	292,292,720	8,659,960	8,659,960	41,499,860
	2.31%	0.07%	0.07%	0.33%

※ 무소속: 1명

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(이하 '제22대 국선')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(2024년 1,141원)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,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·5월·8월·11월의 15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)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.

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「정치자금법」(이하 '법')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%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.(법 제27조 1항)

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%씩을,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%씩을 배분·지급한다.(법 제27조 2항)

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,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.(법 제27조 3항)

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% 이상을 정책연구소에, 10% 이상은 시·도당에 배분·지급하여야 하며, 10%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, 5%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(법 제28조 2항)